

-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이성배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834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8. 7.

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.

2. 제안사유

-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

- 기 간 : 2019. 8. 19 ~ 2019. 8. 26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) : 원안가결

-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관련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
- 지자체장이 사장의 경영성과계약, 경영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“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“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책임”을 지도록 하는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) 제78조제1항1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)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
-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‘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’³⁾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목적과 가치를 고려한 5개 경영평가 대분류지표 중에 하나로 ‘경영성과’를 반영하고 있으며,

<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_경영평가 지표체계>

대분류지표	중분류지표	세부지표
리더십/전략	리더십	경영층의 리더십
	전략	미션·비전 및 경영계획
경영시스템	경영효율화	조직관리, 인사관리, 재무관리
경영성과	주요사업	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
	경영효율성과	경영효율성과
	고객만족성과	고객만족성과

- 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- 2)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8조(경영평가)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3) ‘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’ [4]경영평가 기준_경영평가 지표(31p)

사회적 가치	일자리 확대	일자리창출, 일자리 질 개선
	사회적 책임	고객 및 주민참여, 윤리경영, 노사상생, 재난·안전관리, 지역사회 공헌활동, 사회적약자 배려, 친환경 경영
정책준수	정책준수	공기업정책준수

법 제58조의2⁴⁾제1항 및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그 경영성과계약⁵⁾에는 “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
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사장이 “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”는 것은 실제 조례 적용과정에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임
- 참고로, 서울시 5개 공기업(서울교통공사,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, 서울에너지공사,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) 중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동 조례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,

나머지 4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태임

4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

5) ‘2018년 경영성과계약서’(서울특별시/서울교통공사) 제4조 ①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